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
----------	----

2022년 9월 2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8. 29. 이경숙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2년 09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표창을 수여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 조사 및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표창 조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2. 1. 4)에 따라 의장표창이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되어 타기관 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시 추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현실과 맞지 않는 표창 추천절차, 오타 등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으로 유사한 조항 분류
- “공정한 표창 기회 부여”라는 표창의 원칙 신설(안 제4조)
- 표창 추천권자와 추천절차 수정, 타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절차 강화(안 제11조)
- 표창 추천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12조)
-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
- 제1·2공적심사위원회 소관업무 및 간사 수정(안 제14조)
- 표창의 신뢰도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표창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 표창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 표창대상자에 대한 표창수여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정부 표창 규정」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추천절차, 추천 제외 대상자, 공적사실 확인, 표창 취소, 재교부 및 기록의 관리 등을 정비해 표창 수여 과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 체계의 정비

- 개정안은 모두 15개의 조(條)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정비해 총칙, 표창의 종류와 요건, 표창의 방법과 절차, 보칙 등으로 구분해 4장(章) 18개 조(條)로 확대 정비하고자 함.
- 이는 조례의 체계를 정비해 표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표창추천자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표창 기회의 공정(안 제4조 신설)

- 개정안은 안 제4조를 신설해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음.
- 이는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2022년 1월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명의의 표창이 공무원 징계시 감경 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표창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제고된 데 따른 조치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시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선정을 비롯해 표창 기회의 공정한 제공을 통해 표창에 대한 권위와 공신력을 스스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표창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이중표창의 금지만을 금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을 정비해 동일 공적에 대한 표창 금지, 3년 이내 재수여 금지,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음주운전과 성비위를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표창 제외 등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음.

<표-1> 제12조의 현행 조례,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신 설>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신 설>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신 설>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 설>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 제외 사유를 명시해 표창의 공신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3항과 제4항에서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수사 및 기소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 대상자, 음주운전과 성비위를 포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권자의 직권조사나 관련 자료 제출요구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표창 제외 대상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참고로 현행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는 이중표창금지에 대한 규정 외에 표창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대상자별로 추천 제한 사유를 명시해 관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희롱의 사유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표창금지를 정하고 있음.¹⁾

5 표창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 개정안은 안 제15조를 신설해 표창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음(<표-2> 참조).

1)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표-2> 개정조례안 제15조 신설조항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표창권자는 표창자의 공적이 거짓이거나, 표창제외 대상자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 수여 사실을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표창과 부상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표창 추천권자의 환수 협조의무를 함께 정해 표창 취소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표창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표창 추천과 심사과정의 사전 점검과 함께 표창 수여 이후에도 각종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표창 취소를 통해 표창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표창 취소 과정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표창 취소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6 표창수여 사실확인(안 제16조 신설)

- 안 제16조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이는 현재 특별한 규정없이 표창 수여자의 요청에 따라 표창 분실이나 훼손시 표창 수여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의 자치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표창 수여자가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표창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표창 재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표창 기록의 보존 및 관리(안 제17조, 안 별지 제7호)

- 안 제17조는 현재 표창 수상자를 수상자 명부에 기재해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자료를 포함해 표창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표창의 중복금지나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표창 관리 전반에 해당 기록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향후 표창 기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록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²⁾와 같이 관리하는 기록의 종류를

2)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구분해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안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조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추천절차, 추천 제외 대상자, 공적사실 확인, 표창 취소, 재교부 및 기록의 관리 등을 정비했음.
- 위와 같은 표창 관련 규정을 정비를 통해 표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변화된 표창의 위상에 따른 표창 제도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부: 영구
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준영구
3. 서훈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4.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2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 이경숙, 김규남, 김지향,
박수빈, 박춘선, 박환희,
심미경, 옥재은, 이민옥,
최호정, 한 신, 허 훈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표창을 수여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 조사 및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표창 조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2. 1. 4)에 따라 의장표창이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되어 타기관 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시 추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현실과 맞지 않는 표창 추천절차, 오타 등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으로 유사한 조항 분류
- 나. “공정한 표창 기회 부여”라는 표창의 원칙 신설(안 제4조)
- 다. 표창 추천권자와 추천절차 수정, 타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절차 강화(안 제11조)
- 라. 표창 추천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12조)
- 마.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

- 바. 제1·2공적심사위원회 소관업무 및 간사 수정(안 제14조)
- 사. 표창의 신뢰도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표창 취소 규정 신설(안 제15조)
- 아. 표창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 자. 표창대상자에 대한 표창수여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 표창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으로 유사한 조항을 분류한다.

(제1조~제5조를 제1장 총칙, 제6조~제9조를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10조~제14조를 제3장 표창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제18조를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하는”을 “수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제7조제1항“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를 제7조제2항 “봉사로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표창장)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제5항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제7조제4항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제9조제1항 “의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를 제9조제2항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지역사회발전”를 제9조제3항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단”을 제10조제1항 “다만”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및 각 기관·단체장으로 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추천권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때에는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의원이 아닌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처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⑤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록의 보존·관리)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창권자는 표창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u>하는</u>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u>수여하는</u>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u>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u>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p>	<p>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u>지역사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u>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p>
<p>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3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생 략)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6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삭제>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제8조(상장)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 설>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명 이상과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우에 수여한다.

1. 의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3장 표창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현행 제8조제2항과 같음)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권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 각 부서

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및 각 기관·단체장으로 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추천권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때에는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3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공적

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의원이 아닌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
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의정
담당관,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팀장이 된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
다.

⑤ (생략)

⑥ (생략)

<신설>

<신설>

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처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
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
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
무처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제2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표창
업무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현행 제11조제5항과 동일)

⑥ (현행 제11조제6항과 동일)

제4장 보칙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

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신 설>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의 보존·관리)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한 기록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창권자는 표창의 추천, 공
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